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자체점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도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주차구획 등 설치기준 상향(안 제16조의2,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하고,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여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구체화,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 등 규정(안 제16조의8, 제16조의9, 별지 제8호의8·제8호의9·제8호의10 서식 개정)

수시검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30일) 등을 규정

다.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제도 신설에 따른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규정(안 제16조의15, 별지 제15호의4 서식)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규정

라. 보수원 안전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16조의12, 별지 제15호의5·제15호의6·제15호의7 서식, 별표 1)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1년), 교육내용, 교육시간(6시간) 등을 규정

마.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교육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15, 제16조의16, 제16조의17, 제16조의18)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3년), 교육내용, 교육시간(4시간) 등을 규정

바.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등 안전도인증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10, 별지 제8호의2, 제8호의5, 제8호의6 서식)
안전도인증 업무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인증기관 지정 신청 근거 등을 규정

사.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강화에 따른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대상 등을 규정(안 제16조의12, 제16조의13, 제16조의14, 별지 제17호 서식)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변경 신고 대상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보수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아. 지자체장의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 발급, 표지 부착 방법 등을 규정(안 제16조의24, 별지 제15호의8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운행중지 표지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행중지를 명했을 경우 그 사항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

자. 법령 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인용 규정 정비 (안 1조의2, 제16조의16·17, 제16조의20·21, 제16조의25 내지 27)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인용 규정 정비

차.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외 대상 규정(안 제16조의22)

각종 안전장치의 손상이 없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변형이 없는 경우 등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수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0미터”로, “1.55미터”를 “1.85미터”로, “1,850킬로그램”을 “2,35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00킬로그램”을 “2,650킬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3미터”를 “5.45미터”로 한다.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 본문 중 “2.3미터”를 “2.4미터”로, “1.6미터”를 “1.9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차구획은 너비, 높이 및 길이가 각각 다음 각 목에 따른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의 길이가 5.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높이 1.6미터 또는 1.9미터, 길이 5.3미터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높이 1.6미터 또는 1.9미터, 길이 5.45미터

제16조의5제1항제3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높이 1.9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로, “5.1미터”를 “5.25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미터”를 “2.0미터”로, “1.95미터”를 “2.15미터”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정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지정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정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정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로, “법 제19조의12”를 “제1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만”을 “경우만 첨부하고, 제7호는 수시검사의 경우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일”을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는 20일 이내, 수시검사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12조의3제3항”을 “영 제12

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강도계산서

⑨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이란 직접 자동차를 싣고 운반하는 동력전달부에 구성된 전동기·감속기·제동장치·전동장치·구동장치·유압장치의 변경 또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이 설계 제원과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9 중 “법 제19조의12”를 “법 제19조의12제2항”으로, “법 제19조의22에”를 “법 제19조의23에”로,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의10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지정인증기관 및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대행기관”을 “지정인증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는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의12의 제목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을 “(보수업의 등록신청 및 보수원 안전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한”을 “등록한 자 또는 법 제19조의17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신고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이란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1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수원 안전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3.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 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 법 제19조의14제5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⑩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련법령
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3. 작업환경, 내용 등에 따른 안전조건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에 필요한 지식

⑪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⑫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교육기관은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교육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13의 제목 “(등록대장)”을 “(보수업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를 “법 제

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로 한다.

제16조의14의 제목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를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변경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변경신고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9조의17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별지 제15호서식

③ 법 제19조의17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등록사항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15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 및 보수교육”을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교육 및 보수교육”을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으로, “교육수료증”을 “별지 제15호의7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교육 및 보수교육”을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의20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이란 제16조의12제4항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4시간
2. 보수교육: 3시간
3. 안전관리교육: 4시간

⑦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 받거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항을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의20제1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19조의20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 및

안전검사가 연기된 기계식주차장치

2. 법 제19조23에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기계식주차장치

⑩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4항”을 “법 제19조의20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17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4항”을 “법 제19조의20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1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및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3.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 및 영 제18조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제16조의20제2항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2제6항”으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
(이하 “사고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
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21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4항”을 “법 제19조의22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의2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및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
항”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손상이 없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변형이 없는 경우
3. 기계식주차장치가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의23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

표 2와”를 “별표 3과”으로 한다.

제16조의24부터 제16조의26까지를 각각 제16조의25부터 제16조의27까지로 하고, 제16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출입하는 출입문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조작하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재발급 받아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했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항을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5(중전의 제16조의24)제1항 중 “법 제19조의2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표 2, 별표 3, 별표 4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정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특별자치도·시·군·구”

를 “지정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정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Si/Gun/Gu”를 “Designated Certifica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의6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정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 별지 제8호의9서식 및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5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5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3조(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적용례)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6조의15제1항의 기계식주차장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선임하여 제16조의16에 따른 관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6조의15제1항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16조의12제4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2.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구분		기준
인력	총괄 책임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기계식주차장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식주차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계식주차장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강사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식주차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기계식주차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기계식주차장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이었던 사람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추는 것

비고

1. 시설은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2. 교육을 하기 위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3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구분	자격	업무 내용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 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 소지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및 합격 여부 판정

2. 검사기기

구분	항목
검사기기	1. 전류계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3.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4. 접지저항계 5. 절연저항계 6. 초시계 7.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200mm, 300mm, 1,000mm) 8.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9. 줄자 10. 초음파탐상측정기 11. 진동측정기 12. 와이어로프테스터 13. 와이어로프하중측정기 14. 산업용내시경 15. 열화상카메라 16. 초음파두께측정기 17. 체인 마모 측정기(chain elongation scale) 18. 노트북 19. 조도계

	20. 레이저거리측정기 21. 각도측정기(수평계) 22. 레이저수평계 23. 디지털카메라
--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3]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3제3항 관련)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공통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	16시간 이상	· 주차장법령 · 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기계식주차장 검사기기	16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실무	8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실무	40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	기계공학	8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전기	전기공학	8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공통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	4시간 이상	· 주차장법령 · 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기계식주차장 검사기기	4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실무	8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심사실무	4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기계	기계공학	2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전기	전기공학	2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3. 임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실무

비고: 임시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수료(제17조 관련)

구 분	수수료 금액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5만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건당 4천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사 업 장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주차장치	⑦ 인증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 명 칭	
변경사항	⑩ 변 경 전			
	⑪ 변 경 후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30303-05311민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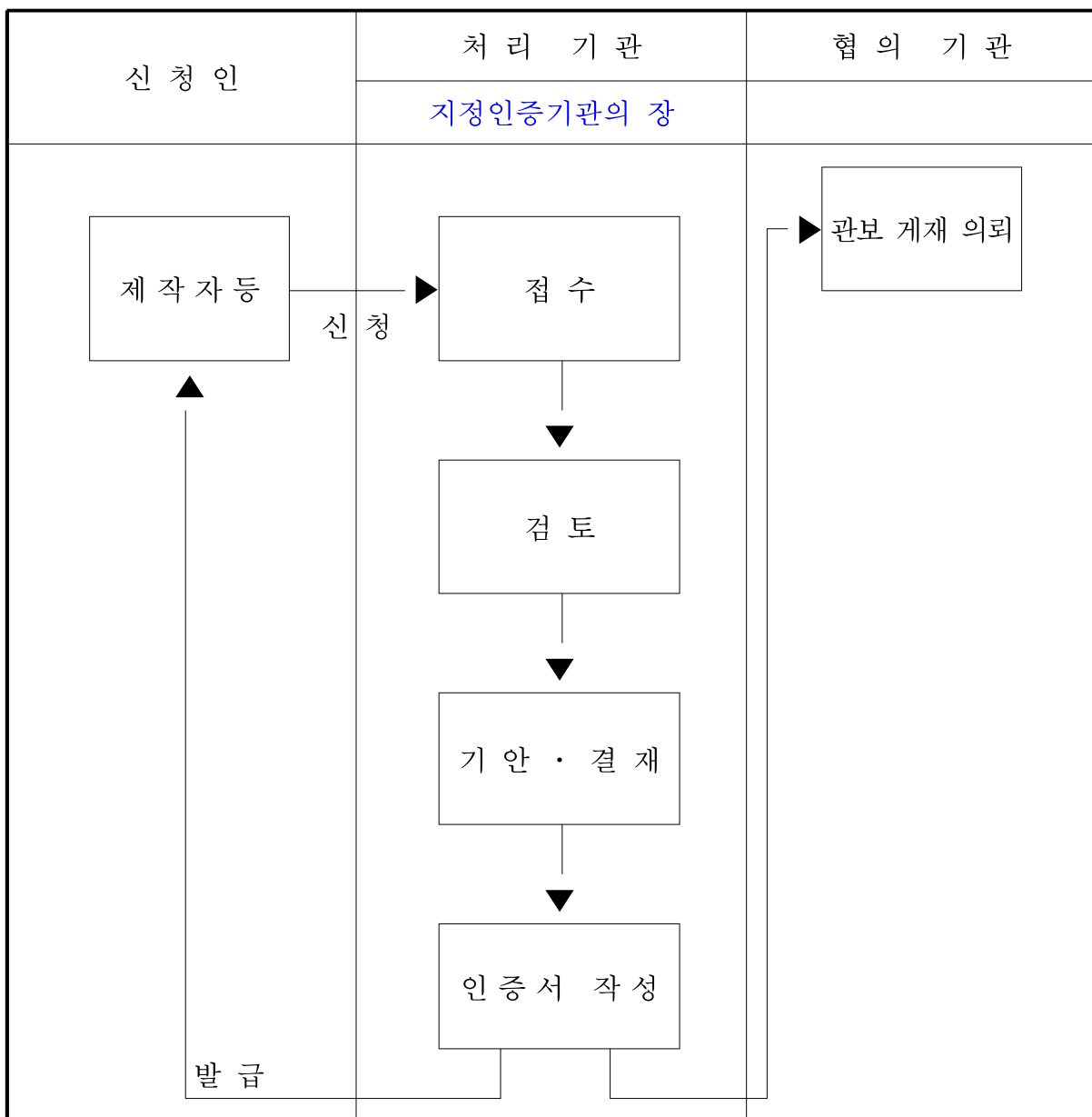
96.3.8 제정

(신문용지 54g/㎡)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⑧·⑨란은 안전도심사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⑦·⑩·⑪란은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만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신 청 인 (제작자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사항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증기관의 장

직인

Certificate of Safety of Car Parking System(s)

1. Certification No.:
2. Producer:
3. Name of Representative:
4. Address:
5. Model:
6. Type of System:
7. Details:

This is to certify the safety of the Car Parking System(s) described above according to the Article 19-7 of Parking Lot Act and the Article 16-6-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sam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Month] [Date], [Year]

The Head of Designated Certification Agency

official
seal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사 업 장	⑤ 소 재 지		⑥ 전 화 번 호	
주차장치	⑦ 종류 및 방식			
	⑧ 명 칭			
	⑨ 인 증 번 호			
재 발 급 신 청 사 유		☐ 못 쓰게 됨 ☐ 잃어버림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못 쓰게 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30303-05711민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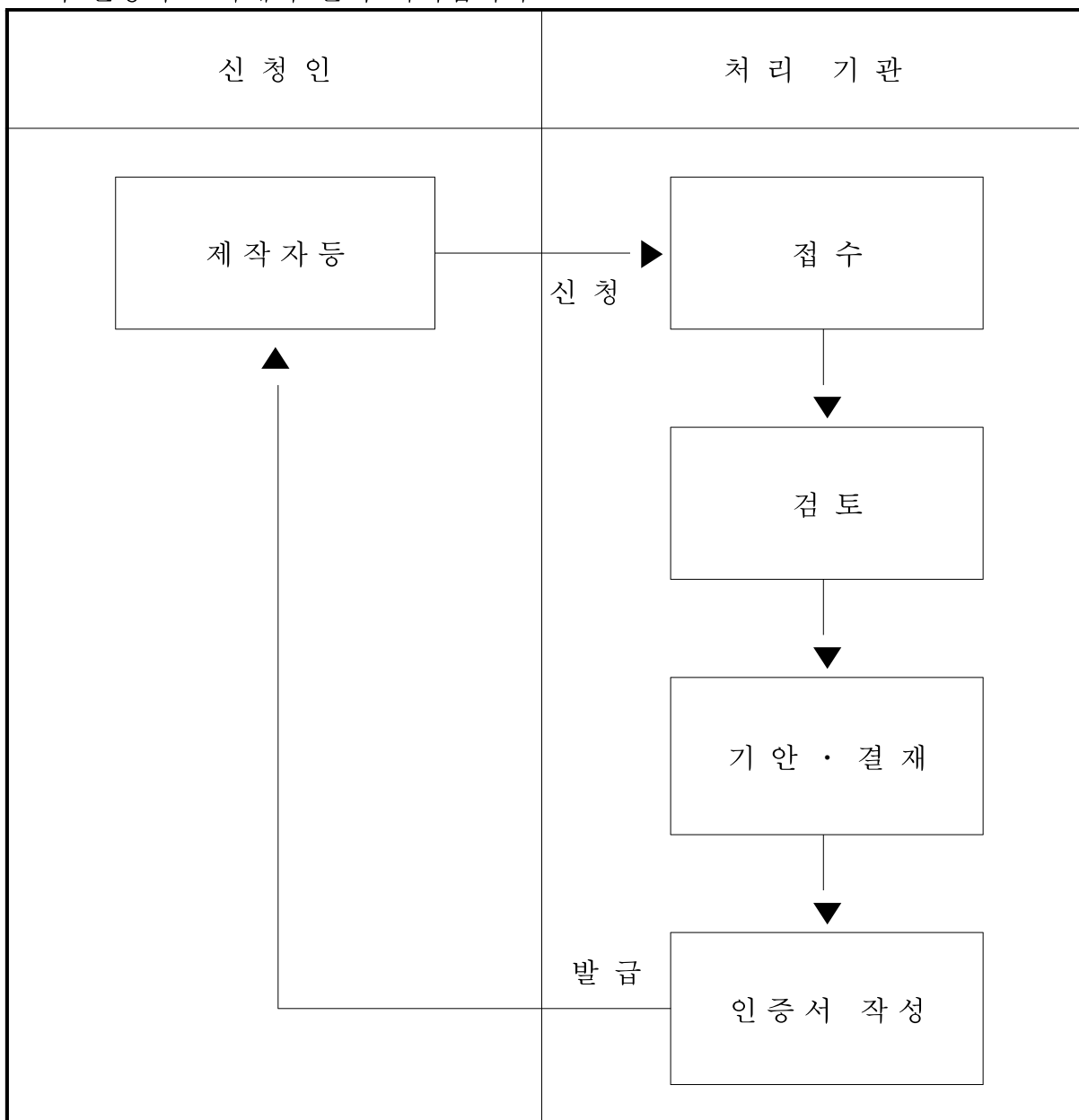
96.3.8 제정

(신문용지 54g/㎡)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⑦·⑧·⑨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처리기간 :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 20일, 수시검사 - 30일
------	------	---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검사의 종류

사용검사 [],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 수시검사 []

주차장치	⑥제작사	⑦전화번호
	⑧인증번호	⑨명칭
	⑩종류 및 방식	
	⑪보수사	⑫전화번호

⑬설치장소

⑭기계식주차장의 직전검사일 또는 변경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제19조의23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제16조의2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첨부서류(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6. 설치장소 약도 7.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강도계산서(수시검사에 한합니다.)	수수료 「주차장법」 제19조의11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에서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	--	---

유의사항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란은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⑥·⑧·⑨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⑭란은 신청인이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는 직전검사일, 수시검사는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	→	접수 담당부서	→	검토 담당부서	→	승인 담당부서	→	현장검사 담당부서	→	결재 담당부서	→	결과 통보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확인증번호(인증번호) :

검사구분 : 사용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관리자 성명 :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호기)

*최대수용가능차량 중량 :

제작사(보수사) :

설치장소 :

검 사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차기검사 및 유효기간만료일 :

년 월 일

전문검사기관의 장 인

100mm × 70mm (보존용지(1종) 120g/㎡)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1. 종류 및 방식 :

2. 명칭 :

3. 인증번호 :

4. 제작자 등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관리자의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장소 :

7. 사용금지 사유 :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 수시검사 불합격

8. 사용금지일 :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제19조의2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에 따라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며, 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6조의22제6항에 따라 이 사용금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전문검사기관의 장

직인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210mm×297mm
5. 종이질: 인쇄용지(특급) 120g/㎡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6조의15제8항 관련)

구분	점검항목		점검방법
출입구 및 안전장치	출입문 있는 경우	○ 출입문 상태	· 출입문의 작동상태 및 이상소음 확인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힌 후 작동되는지 확인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자동차 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 확인
		○ 출입문이 2개인 경우	· 동일층에 주차장치의 출입문이 2개인 경우에는 이를 입고 또는 출고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 확인
		○ 진입금지 신호장치	· 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등의 설치 및 점등 상태 확인
	출입문 없는 경우	○ 작동중 접근시 정지장치	·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출입구 안으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기동벨	· 주차장치의 작동을 알리는 기동벨의 작동상태를 확인
	○ 작동 스위치		·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 · 보존 및 관리 상태 확인
	○ 수동정지장치		· 주차장치의 운전조작반에 기계장치에 이상발생 및 비상시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운반기내 정위치정차장치		· 운반기내 적정제원(길이, 너비, 높이) 초과시 이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 적재물 등		· 기계식주차장 내부(출입구 내부, 운반기 등)에 적재물 등 간섭물 확인
기 타	○ 시운전		· 운전 시 이상소음 및 진동 확인
	○ 동작 완료 시 운반기 위치		· 주차장치의 동작이 완료된 때에 운반기가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는지 확인
	○ 경계시설 등		· 기계장치가 외부에 노출되고 도로와 접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치에는 울타리 등 적절한 경계시설 상태 확인 · 출입구 내부에 운전자 등 보행자의 발이 빠지는 틈새 또는 추락 위험 공간이 있는지 확인
	○ 조명시설(출입구 내부)		·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상태 확인
	○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 부착		·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 및 검사확인증이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되었는지 확인 ·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 수용가능한 자동차 제원 등 표기 확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규칙 제16조의12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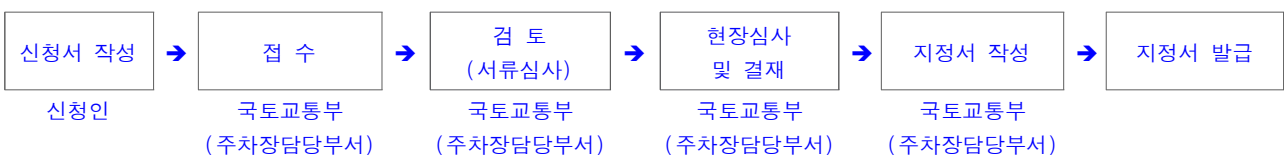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교육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범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8항에 따라 위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

관련규정 :

수료일자 :

위 사람은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표지

1. 종류 및 방식 :

2. 명칭 :

3. 인증번호 :

4. 제작자 등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5. 관리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6. 설치장소 :

7. 운행중지 사유 :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 ☐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 ☐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운행중지일 :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제19조의2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표지를 발급하며, 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운행중지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30조제2항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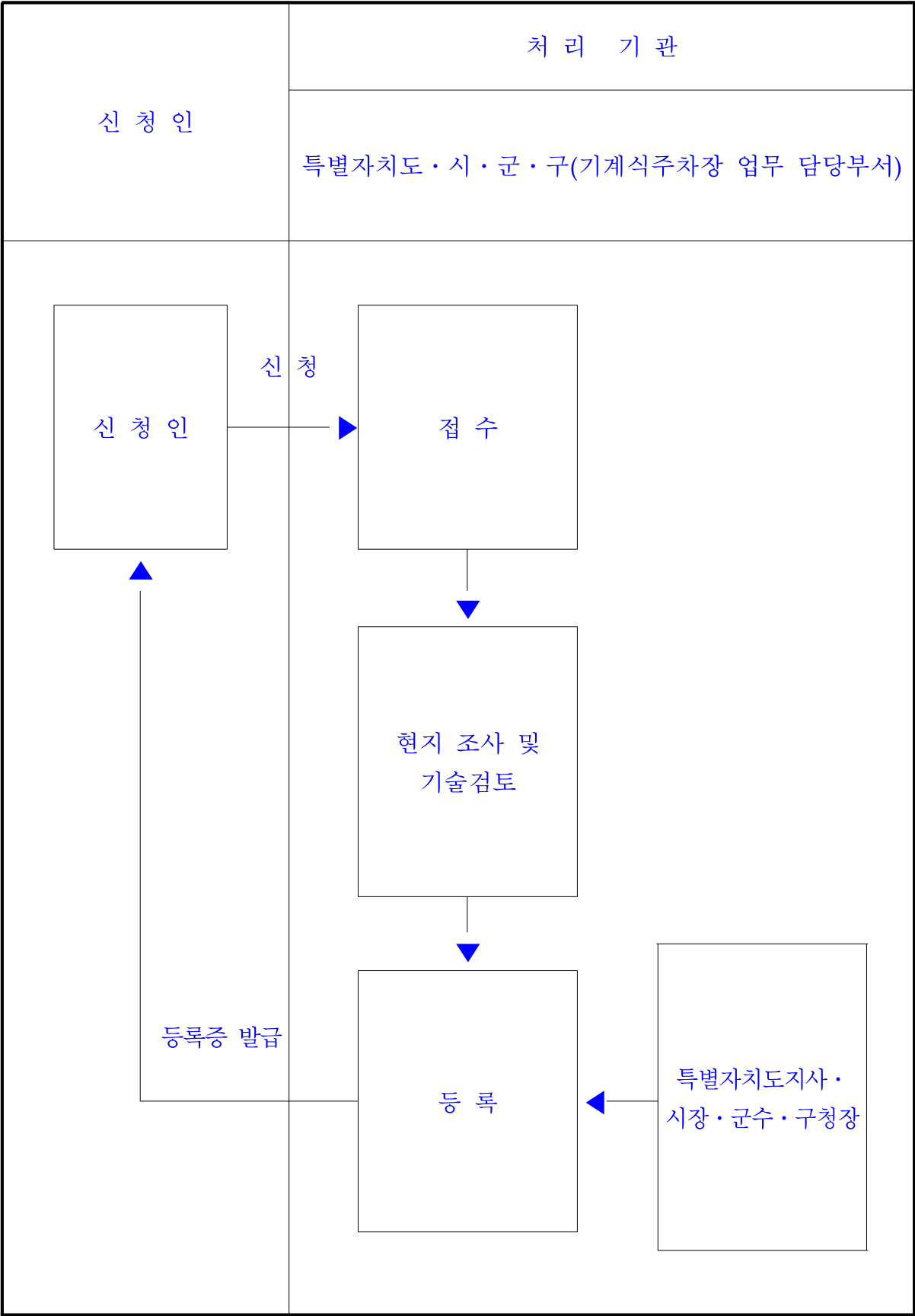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210mm×297mm
5. 종이질: 인쇄용지(특급) 120g/㎡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③ 주사무소	(전화:)		
		④ 영 업 소	(전화:)		
			(전화:)		
	⑤ 대표자 성명		⑥ 생년월일		
	⑦ 보수업등록번호		⑧ 보수업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⑨ 업체명(법인명)		변경 전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변경 후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⑩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⑪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⑫ 보수원(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주차장법」 제1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수수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보수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② (생략)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 라. (생략) <u>마.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u> 바. (생략)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삭 제></u> 마. (현행 바목과 같음)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 -----. 1. ----- ----- ----- ----- ----- -----

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

-----.

가. -----
5.2미터 ----- 2.0미터
터 ----- 1.85미터 ---
----- 2,350킬로그램 --

나. -----

----- 2,650킬로그램 --

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
유 공간

2. (생략)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
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
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
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
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
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
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5.2미터 ----- 2.0미
터 ---

나. -----
5.45미터 -----

터 이상 4.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u>2.3미터</u> 이상, 높이가 <u>1.6미터</u> 이상으로 하여야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 ----- ----- ----- ----- ----- ----- <u>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u>-----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 <u>2.4미터</u> ----- -- <u>1.9미터</u> -----
---	--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 <단서 삭제>

3. 주차구획은 너비, 높이 및 길이가 각각 다음 각 목에 따른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의 길이가 5.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높이 1.6미터 또는 1.9미터, 길이 5.3미터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높이 1.6미터 또는 1.9미터, 길이 5.45미터

4. -----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
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
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5.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
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
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
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
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
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
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
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 2.0
미터 -----
----- 2.15미터 -----
-----.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

----- 지정인증
기관의 장-----

-----.

② -----

----- 지정인증기관의 장에
게 -----

----- <단서 삭제>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
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
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
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
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
다.

1.·2.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
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
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
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
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③ -----

-- 지정인증기관의 장-----

--.

1.·2. (현행과 같음)

④ -----
----- 지정
인증기관의 장-----

--. -----
-----.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
검사 등) ① -----
--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또
는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한다)-----

----- 제19

조의12제2항-----

-----.

----- 경우만 첨부하고, 제7

호는 수시검사의 경우만 -----

1. ~ 6. (현행과 같음)

7. 변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강도계산서

② -----

----- 사용검사와 정기검

사는 20일 이내, 수시검사는 30

일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2조의3제5항-----

[illegible]

(8) -----

-- 안전검사 -----

-----.

(9) 법 제19조의9제2항 제3호가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략)
2. 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

과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 법 제19조의12제2항----- 법 제19조의23에 ----- 법 제19조의23제5항-----.

제16조의10(지정인증기관 및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인증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 . 다만, 제2호는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현행과 같음)
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치도를 적은 서류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및 보수원 안전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한 자 또는 법 제19조의17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신고를 한 -----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이란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1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수원 안전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

3.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4.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

<신 설>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 설>

⑨ 법 제19조의14제5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신 설>

⑩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 지식 및 관련법령
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3. 작업환경, 내용 등에 따른 안전보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에 필요한 지식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⑪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⑫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교육기관은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교육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13(보수업 변경신고 등)

---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
-----.

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변경 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변경신고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

<신 설>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 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식에 따른다.

1. 법 제19조의17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별지 제15호서식

③ 법 제19조의17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등록사항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이란 제16조의12제4항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

교육을 말한다.

② -----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교육-----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4시간

2. 보수교육: 3시간

3. 안전관리교육: 4시간

⑤ 교육기관-----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 별지 제15호의7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⑥ 교육기관-----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교육, 보수교육
및 안전관리교육-----

-----.

-----.

⑦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 받거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항을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의20제1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⑨ 법 제19조의20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 및 안전검사가 연기된 기계식주차장치

<신 설>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2. 법 제19조23에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치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기계식주차장치
⑩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6항-----

-----.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
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신설>

3. (생략)

제16조의20(사고보고 등) ① (생
략)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
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
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
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
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
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
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

1. (현행과 같음)

2. ----- 기계식주
차장관리자등 및 기계식주차
장치 관리인의 배치-----

3.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6조의20(사고보고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법 제19조의22제6항-
-----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6조의21(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① ~ ② (생략)

<신 설>

③ -----

----- 사고조사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1(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2제5항-----

-----.

제16조의22(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손상이 없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변형이 없는 경우

3. 기계식주차장치가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제4항-----

-----.

⑥ -----
----- 제4항-----

-----.

⑦ 제6항-----

-----.

제16조의23(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①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제16조의23(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① -----

----- 별표 2-----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표 3과-----.

제16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8서식의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출입하는 출입문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조작하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재발

	<u>급 받아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u> <u>③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했을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항을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u>제16조의24</u>(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u>법 제19조의24제1항에</u>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u>제16조의25</u> (생략) <u>제16조의26</u> (생략)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u>별표 3</u>와 같다.	<u>제16조의25</u>(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 ① ----- <u>법 제19조의25제1항</u>----- -----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26</u> (현행 제16조의25와 같음) <u>제16조의27</u> (현행 제16조의26과 같음) 제17조(수수료) ----- ----- <u>별표 4</u>-----.